의안번호	2215891
의 뢰 인	최형두의원
회 답 일	2026.2.6.
추계번호	26D00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현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함 ※(현행)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기준을 시·군·자치구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44조제2항[1]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2.27.) 등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 지역임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등 현황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생 략)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하여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 시책을 추진(제21조[2])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2조[3])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이 추가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될 인구감소지역등과 추진될 시책의 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참고 1] 인구감소지역등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도 포천시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